

『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('09.12.17)의 후속조치로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임용자격기준,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,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 제4조제3항)

-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마련(안 제5조제2항)
-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(안 제8조의2)
-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
-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(안 제12조의2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
-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통보

[경상북도 자치행정과-20518호(2010.10.10.)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('09.12.17)의 후속조치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마련과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해 임용시 공고 생략 및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회를 부여하고,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및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, 특정분야 공무원채용에 따른 임용절차와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다른 별정직공무원과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